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건축물 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11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청 원 인 : 김인수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58-12)
- 나. 소개의원 : 이정찬 의원(민주당, 양천구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다. 접수일자 : 2011년 2월 10일
- 라. 회부일자 : 2011년 2월 11일
- 마. 상정일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년 6월 30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강북삼성병원의 본관증축공사로 인하여 문화재인 경교장의 경관훼손과 외관 손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 증축공사가 가능하다고 협의해 주었는 바, 불법 건축허가에 따른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청원소개의원 요지(소개의원 : 이정찬 의원)

- 강북삼성병원은 본관증축공사로 인하여 문화재인 경교장의 경관훼손과 외관 손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관한 종로구에서는 문화재로 지정예정인 경교장에 대한 심의를 지도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줌에 따라 증축공사가 강행처리 되었음.
- 이에 경교장 훼손은 물론 복원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260억대의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서울시가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건축허가관련 행정추진 경위

- 2001.2.14.: 문화재(경희궁) 주변 건축에 따른 심의신청
(삼성의료재단 → 종로구 건축과)
- 2001.2.15.: 문화재(경희궁) 주변 건축에 따른 심의요청
(종로구 건축과 → 서울시 문화재과)
- 2001.2.21.: 문화재(경희궁) 주변 건축에 따른 심의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원안승인)
- 2001.2.26.: 원안승인통보(서울시 문화재과 → 종로구)
- 2001.3.27.: 경교장 문화재 지정 심의(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 2001.4.3.: 경교장 문화재 지정
- 2001.4.6.: 경교장 문화재 지정 통보(서울시 문화재과 → 종로구 문화진흥과,
2001.4.11.: 종로구 문화진흥과 → 건축과)
- 2001.5.25.: 건축허가 신청, 6.15.(건축허가)
- 2003.1.3.-6.27.: 임시 사용승인서 처리

○ 삼성의료원 5개동 증축에 대한 2001년 2월 21일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당시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경희궁터를 중심으로 문화재보호구역과 양각을 적용하여 증축허가 심의가 통과됨.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것을 당시 회의에 참석한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위원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재산보호 측면이 더 고려된 결정이 이루어졌음.

○ 삼성병원의 증축과 관련하여 경희궁주변 심의(2001.2.21.)에서는 문화재심의가 통과되었으나, 경교장이 시지정문화재로 지정(2001.4.3)된 이후, 건축허가부서인 종로구 건축과는 경희궁주변이 아닌 경교장주변에 대해 서울시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건축허가(2001.6.15)를 내어 주었음. [시지정문화재 지정통보(2001.4.6.)]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원인이 종로구 건축과에 경교장주변 건축허가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 요청(2003.10.2.)을 제기하자 2003.11.20. 종로구청 문화진흥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허가 지침위반 통보 및 조치지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따른 종로구의 처리결과는 문서로 남아있지 않음.

- 이러한 건축허가가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삼성과의 유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혐의를 갖고 청원인이 2003.11.24.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강북삼성병원장, 삼성생명을 고발하고 2004.6.4. 감사원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감사원에서는 이를 서울시에 이첩하였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1.2.21.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예정하여 심의하였고 문화재보호법위반 및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조사 후 「각하」 처분한 사항이므로 시의 별도 의견이 없다고 통보함.
-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종로구청이 서울시가 시달한 「문화재주변건축행위 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지시공문에 대해 종로구청의 후속처리 결과에 관련된 문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감독기관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음.
- 이러한 잘못된 문화재보호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청원인이 서울시와 감사원 등에 자료공개 및 민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청원인에게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답변한 점과 이러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 10여년이 지났고 관련 공무원도 대부분 부서를 옮겼거나 퇴직을 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원이 통과되어 서울시에 이첩하여도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견서

□ 청원명 :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

□ 처리해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

□ 채택의견

- 강북삼성병원은 본관증축공사로 인하여 문화재인 경교장의 경관훼손과 외관 손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바, 관할 종로구에서는 문화재로 지정예정인 경교장에 대한 심의를 지도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줌에 따라 증축공사가 강행처리 되었음.
- 이에 경교장 훼손은 물론 복원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서울시는 2001년 당시 진행된 260억대의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조사하여 규명하여야 할 것임.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5	접수년월일	2011. 2.10
청 원 인	김인수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58-12)		
소개의원	이정찬 의원(민주당, 양천구 제2선거구)		
건 명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		
소 관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요 지〉

- 청원인은 강북삼성병원의 본관 증축공사로 인하여 서울시 유형 문화재인 경교장의 경관훼손과 외관이 손상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경교장에 대하여 문화재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종로구청에 증축공사가 가능하다는 협의를 해 주어 강북삼성병원에서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경교장 훼손 및 복원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 함.